
- 2020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20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20건	주의 7 시정 13		5,098,300		
1	◆	2020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770,000		
2	◆	2018~ 2019	주민세(법인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징수	595,000		
3	◆	2018~ 2019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관리 소홀	주의				
4	◆	2019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시정				
5	◆	2018~ 2019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주의				
6	◆	2018~ 2019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과다 지급	주의				
7	◆	2018~ 2019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787,000		
8	■	2020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739,000		
9	■	2018~ 2019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징수	433,000		
10	■	2018~ 2019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소홀	주의				
11	■	2019	공가 사용 부적정	시정	회수	115,300		
12	■	2019~ 202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3	■	2019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42,000		
14	■	2018~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45,000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15	▣	2020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262,000		
16	▣	2018	보험료 사후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1,134,000		
17	▣	2018~ 2019	공유재산 임대료 및 소하천점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기한 미준수	주의				
18	▣	2018~ 202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공공기록물 등록 소홀	주의				
19	▣	2018	건축신고 처리 소홀	시정				
20	▣	2019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176,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금액 770,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시공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예정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3건				△ 770	
*** 마을안길 소교량 확장공사 [**** **]	'20.**.**.	'20.**.**. ~'20.**.**.	**,***	△ 110	철근가공및조립 설계 시 공정별 구분 없이 전체 철근량에 대해 철근가공 및 조립품으로 과다적용
*** 배수로 및 사면정비공사 [(주)** **]	'20.**.**.	'20.**.**. ~'20.**.**.	**,***	△ 320	
** **** 마을안길 정비공사	미계약		**,***	△ 340	뒷채움 잡석 설치 시 다짐장비 추가 계상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부서)**에서는 2020.**.**. **● ■**과 계약 체결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실시설계용역(㉠)』 성과 결과에 의거 자체 설계한 ‘**㉡ 마을안길 소교량 확장공사**’ 및 ‘**㉢ 배수로 및 사면정비공사**’에 대하여 암거구조물 및 L형옹벽 구조물의 철근가공및조립 설계시 철근의 절단 및 절곡이 필요한 철근에는 철근가공 품을 적용하며, 절단과 절곡이 필요 없는 횡철근의 경우에는 철근조립 품만 적용하여야 하나, 전체 철근량에 대하여 철근가공및조립 품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다적용 되었으며,

‘**㉣ ▲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시 뒷채움잡석 설치는 인력 및 굴삭기 조합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짐장비(물탱크 및 진동로울러)를 추가하여 설계서를 작성함으로써 총 3건의 77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770,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595,000원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표 1. 주민세(법인균등분) 부과 누락 내역]

연번	과세물건 (사업장소재지)	연도 (과세기준일)	납세자명	합계(원)	주민세	지방교육세
1	◆ ♠ **-*번지	2019년	◆	220,000	200,000	20,000

[표 2. 주민세(재산분) 부과 누락 내역]

연번	과세물건 (사업장소재지)	연도 (과세기준일)	납세자명	과세면적 (㎡)	㎡당세액 (원)	합계(원)
소계	2건					375,000
1	◆ ♠ ***번지,***-*번지	2018년	㉑	750	250	187,500
2	“	2019년	“	750	250	187,500

※ 가산세(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별도 산출

2. 내 용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들 둔 법인에게 자본금액 또는 종업원수에 따른 정액 세율을 적용하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법인균등분)을 부과하면서 관내 [표 1]의 사업장을 둔 법인(1개소)에 대한 주민세(법인균등분) 1건, 220,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다음으로,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 2]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1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2건 375,0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누락한 주민세(법인균등분 및 재산분) 595,000원 및 가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정부양곡 신청 기준 부적합 현황

연번	신청인	가구원수	신청내역	부적합 기간
1	***	1인	20kg	2019. 9월~12월
2	***	1인	20kg	2018. 12월 ~ 2019. 1월
3	***	1인	20kg	2018. 12월 ~ 2019. 1월

2.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월 구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로부터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기준으로 신청 받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양곡 구입 기준은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3가구에 대하여 1인 가구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정부 양곡 20kg를 신청 받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지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가설건축물 관리소홀(존치기간 만료대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존치기간
1	2010-◆-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0.08.02	***	◆ ▷ **-*	창고	2019.07.29
2	2009-◆-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09.12.22	***	◆ ◀ 산**	임시 사무실	2019.12.21

2. 내 용

「건축법」 제20조, 제79조 및 제80조 등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신

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기타사항'란에 위반일자 및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의 가설건축물 2건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0.3.11.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조사 후 원상복구(자진철거)등의 시정명령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2건의 건물에 대하여 기간연장 또는 원상복구(자진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일	징수금액(원)	은행납부기한일	은행납부일	지연일수	납부자명
계	8건	90,500				
1	2018.11.01	5,000	2018.11.02	2018.11.05	1일	◆
2	2018.12.18	6,100	2018.12.19	2018.12.21	1일	"
3	2018.12.21	11,800	2018.12.24	2018.12.26	1일	"
4	2019.01.02	17,300	2019.01.03	2019.01.04	1일	"
5	2019.01.31	4,800	2019.02.01	2019.02.07	1일	"
6	2019.03.13	26,500	2019.03.14	2019.03.15	1일	"
7	2019.06.05	6,600	2019.06.07	2019.06.10	1일	"
8	2019.07.01	12,400	2019.07.02	2019.07.03	1일	"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증지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어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2018. 11월부터 2019. 7월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8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인증기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과다 지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원)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정당금액			과지금액
		품명	수량 (kg)	단가	금액	수량 (kg)	단가	금액	
계	3건				3,037,000			2,883,000	154,000
2018.04.20	*** 부녀회	페비닐 (B급)	8,020	100	802,000	7,020	100	702,000	100,000
2019.04.22	***장	페비닐 (B급)	15,570	100	1,557,000	15,530	100	1,553,000	4,000
2019.05.03	***마을회	페비닐 (B급)	6,780	100	678,000	6,280	100	628,000	50,000

2. 내 용

삼척시 환경보호과에서는 2000년부터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성숙으로 수집장려금 제도 필요성이 감소하고 단체들의 수거 보상금 지원이 증가하면서 2014년에 품목별 보상금 단가를 조정¹⁾한 사실이 있다.

※ 수집장려금 지급단가

품목	폐지 (kg)	고철 (kg)	병		캔류		PET병 (kg)	플라 스틱류 (kg)	비료 포대 (kg)	농약빈병(kg)			페비닐 (kg)			잡병 (kg)	기타 (kg)
			kg	개당	철 (kg)	알루 미늄 (kg)				유리병	PET	농약 봉지	A 등급	B 등급	C 등급		
금액(원)	10	10	20	10	40	40	60	50	40	150	800	2,760	140	100	60	50	20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부녀회**’ 등 3건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계량확인서의 페비닐 품목의 무게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액보다 154천원을 과다지급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시 계량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장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환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호과-7610(2014.09.29.)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지침 변경」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787,000원

【제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비고
계	계	4건				787	
1	2018.**.**	▣ ⊖ 정비공사	주식회사 **	**,***	건강연금	134	증빙내역 없음
2	2018.**.**	● 농로 개선공사	(합)****	*,***	건강연금	79	증빙내역 없음
3	2019.**.**	●(**) 사면정비공사	****(주)	**,***	건강연금	522	증빙내역 없음
4	2019.**.**	◆ ▲ 관로 보은외 1개소 응급복구공사	**(**)개발	*,***	산재	52	증빙내역 없음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정비공사’ 등 4건 35,921천원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부내역, 가입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총 4건 787천원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미정산한 보험료 787,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739,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시공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예정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				△ 739	
****(**) 석축설치 및 마을안길 확장공사 [****(주) ***]	'20.**.**	'20.**.**~ **.**	**,***	△ 739	· 철근 및 동바리공 수량과다 · 뒷채움 잡석 설치 시 다짐장비 추가계상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발부서)**에서는 2020.**.**. ⊖ ◆과 계약 체결한 『2020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1차-2)』 성과 결과에 의거 발주한 ‘**● (●) 석축설치 및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슬라브 확장 구간의 철근 및 동바리공 수량 산출 오류로 인하여 관련 수량이 과다적용 되었으며,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시 뒷채움잡석 설치는 인력 및 굴삭기 조합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짐장비(물탱크 및 진동로울러)를 추가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총 73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739,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433,000원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납세자	과세물건	건수	과세면적	과세표준	금 액	비고
계		2	2	4			433,000	
주민세 (재산분)	2018	***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1	443m ²	250	110,750	
주민세 (재산분)	2019	***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1	443m ²	250	110,750	
주민세 (재산분)	2018	***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423m ²	250	105,750	
주민세 (재산분)	2019	*** 마을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423m ²	250	105,750	

2. 내 용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사업소(2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4건 433,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누락한 주민세(재산분) 433,000원 및 가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경작사실 심의회 개최현황

읍면	2018년	2019년	비고
□	개최	미개최	

나. 직불금 등록증 발급현황

읍면	직불제	2018년			2019년		
		발급대상	발급	미발급	발급대상	발급	미발급
□	계	320	186	134	309	0	309
	쌀직불제	76	74	2	72	0	72
	밭직불제	31	17	14	31	0	31
	조건불리직불제	213	95	118	206	0	206

2. 내 용

□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 보전, 식량

자급률 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내용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 승계자 심사, 신규 신청자 및 농지 심사, 동일 필지 중복신청자 실경작 확인, 부당수령자 소유농지 포함 확인, 임차농지 무단점유 확인,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의뢰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전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 후 직불금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직불금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 등을 심사 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해야 함에도 2019년에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고, 직불금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직불금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8년~2019년 기간동안 443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심사위원회 개최, 등록증 발급통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농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5,300원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시작일시	종료일시	공가 일수	공가사유	비고
■	***급	***	2019.**.**. 09:00	2019.**.**. 18:00	1일	가사정리차 (조카 결혼식 참석)	공가1일 부정사용

나.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연도	성명	지급단가	총 연가일수	사용일수	보상일수	지급액	부적정 보상내역	
							일수	금액
2019	***	115,308	**일	*일	**일	*,***,***	1일	115,3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라 공가사유²⁾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³⁾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소속직원의 휴가⁴⁾ 신청 시 휴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하고, 조카 결혼식은 공가 및 특별휴가(경조사 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가 신청을 반려하고 연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근무상황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소속직원의 공가 신청이 부적절함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 1명이 허위 공가신청에 따른 연가보상비 115,3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거 없는 공가 사용으로 부당수령한 연가보상비 115,300원을 회수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참가,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등 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에 따른 투표 참가, 승진·전직시험 응시, 건강검진, 헌혈, 친제지변, 올림픽·진국체전 등 참가,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의원회 참석 등

3) 결혼(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산(배우자), 입양(본인),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부모 포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4)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자	예산과목 (203목)	집행내용	대상	집행금액	1인당 집행 기준액		
					기준액	품야액	비고
계	3건			1,345			
2019.11.08	정원가산	2019년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회식	소속직원 12	420	30	35	5천원 초과
2019.11.11	기관운영	제**회 ***** 행사 개최에 따른 관계자 만찬	공무원 7, 기관단체장 8	512	30	35	5천원 초과, 명단누락
2019.11.26	기관운영	찾아가는 ***** ***** 관계자 만찬	공무원 6, 관계자 6	413	30	35	5천원 초과

2. 내 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회식’ 등 3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접대성 경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품의하거나,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2,000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구분	미정산 금액	비고
2019.**.**	●(☒) 하천 진입로 개설공사	*****(주)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42	발급내역 없음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르면, 발주자는 법 제68조의3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하천 진입로 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1건 42천원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미정산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42,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45,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통계목	대금 청구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6,073			45 (미소화)
2018.**.**	장비임차 용역(굴삭기)	*****	401.01	1,320 (계좌이체)	-	30	30 (미소화)
2019.**.**	관용차량 타이어 구입 및 앰프시설 등 부품교체, 수선	****	201.02	1,300 (신용카드)	15	-	-15 (과소화)
		*****	201.02	1,080 (신용카드)	15	-	-15 (과소화)
		*****	201.02	1,198 (신용카드)	15	-	-15 (과소화)
2019.**.**	민원실 복사기 토너 등 구입	*****	201.01	1,175 (계좌이체)	-	15	15 (미소화)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⁶⁾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4항 [별표 2]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민원실 복사기 토너 등 구입’ 등 2건 2,495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45천원을 미소화하였으며, ‘관용차량 타이어 구입 및 앰프시설 등 부품교체 및 수선’ 1건 3,578천원을 집행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입의무 면제대상임에도 지역개발채권 45천원을 과다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4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채권매입 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2019.7.26.시행)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62,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시공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예정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				△ 262	
*** 석축 설치공사 [(주)**** **]	'20.**.**	'20.**.**~ **.**	**,**	△ 262	뒷채움 잡석 설치 시 다짐장비 추가계상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

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발부서)**에서는 2020.**.**. ● □과 계약 체결한 『2020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1차)』 성과 결과에 의거 발주한 ‘**▣ 석축 설치공사**’에 대하여 석축찰쌓기 단가 산출 시 뒷채움잡석 설치는 인력 및 굴삭기 조합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다짐장비(물탱크 및 진동로울러)를 추가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262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 시 과다 계상된 262,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134,000원

【제 목】 보험료 사후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시공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급예정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과다계상내역
계 - 1건				△ 1,13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삼 소교량 개설공사[****(주)]	'18.**.**	'18.**.**~ **.**	**,**	△ 1,134	이윤과다적용:136천원 보험료미정산:998천원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 의하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장제7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율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8.**.**일 ▢(주) ◇과 계약체결 시공한 「▣ ▢ 소교량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변경계약일 2018.**.) 착공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인 14.5402%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윤율 15.0%를 적용하여 136천원을 과다 집행하였고,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의 납부 확인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변경 시 건강·연금·장기요양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998천원을 과다 집행하여 총 1,134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이윤율 과다 적용 및 보험료 미정산으로 과다 집행된 1,134,000원에 대해 감액 조치 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및 계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유재산 임대료 및 소하천점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기한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과목별	연도별	건수	금액	법정 납부기한	부과납기일
계		135	43,131,970		
정기분 시유재산임대료	소 계	96	22,699,000		
	2018	49	11,020,160	1.31.	3.21.
	2019	47	11,678,840	1.31.	4.30.
정기분 소하천사용료	소 계	39	20,432,970		
	2018	19	10,187,040	3.31.	7.13.
	2019	20	10,245,930	3.31.	6.10.

2. 내 용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1년 이상 사용하는 정기분 사유지 임대료를 매년 1월에, 정기분 소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3월 이전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전수에 걸쳐 확인한 결과 총 135건 43,131,970원에 대하여 최소 1달에서 최장 3달에 걸쳐 이러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세외수입의 부과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징수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공공기록물 등록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비전자 공공기록물 미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민원접수	전자문서생산시스템 등록	전자문서생산시스템 미등록	비고
계	52	9	43	
2018	24	-	24	3.1~12.31
2019	24	5	19	1.1~12.31
2020	4	4	-	1.1~2.29

※ 세부내역 불임참조

2.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3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는 민원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로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민원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등록·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8.3.1. ~ 2020.2.29. 기간 중 총 52건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43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새울 행정시스템 상 민원문서로만 등록하고 전자문서 생산시스템(온-나라)에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문서 접수 시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농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건축신고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축신고 효력상실 현황

신고번호	신고일자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증축면적	구조
2018-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증축신고-*	2018.6.14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 1필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82.11㎡	일반철골 구조

2. 내 용

「건축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며,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1건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증축신고 후 2020.3.25. 감사일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효력을 상실⁷⁾하였음에도 건축행정시스템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축신고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축법」에 의거 미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해당 건축물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착수한 상태로 미신고 건축물로 확인

【일련번호 : 2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행정복지센터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76,000원

【제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미정산 금액	비 고
계	계	2건				176	
1	2019.**.**	*****(****) 배수로 설치공사	(주)****	**,***	환경 관리비	73	노무비 중복
2	2019.**.**	*** 배수로 정비공사	(주)****	**,***	환경 관리비	103	증빙내역 없음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배수로 설치공사’ 등 2건 25,444천원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노무비랑 중복된 인건비를 사용내역으로 제출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총 2건 176천원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176,000원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